**탄소감축인증센터 운영 지침**

제정 2023. 02. 23.

1. **(목적)** 본 지침은 탄소감축인증센터의 업무사항과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책임과 권한)**
   1. 사무국
      1.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동향을 고려하고 자발적 배출권 인증 기제에 부합하도록 탄소감축인증표준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2. 탄소감축인증표준에 의거 감축사업 사업자의 방법론 및 감축사업 등록, 감축량 인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관련 양식을 생성·관리하여야 한다.
      3. 탄소감축인증표준의 원칙 및 기준, 감축사업 사업자의 방법론 및 감축사업 등록, 감축량 인증 등에 대한 절차와 관련 양식을 정기적으로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4.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동향 및 자발적 배출권 인증 기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본 지침 및 업무에 반영한다.
      5. 감축사업 사업자의 감축사업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적용 가능한 국내·외 배출권 인증 기제의 기 등록 방법론을 인증위원회에 직권상정하여 심의·조정 후 등록한다.
      6. 감축사업 사업자가 제3자 검증을 완료 후 제출한 방법론 및 감축사업 등록 신청서, 감축량 인증신청서를 적합성 검토 후 검토 결과를 문서화하여 인증위원회에 상정한다.
      7. KCS 수립 및 탄소감축인증센터의 구축 목적과 절차, 운영과 관련하여 감축사업 사업자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방법론 등록 및 감축량 인증을 독려한다.
      8. 사무국은 운영위원, 인증위원, 사무국 직원, 등록부 관리자에 대해 KCS 직무상 습득한 보안사항 누설,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상충 및 공평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본 지침의 별지 제2-1호, 별지 제2-2호에 서약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
      1. 국내·외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감축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2.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자발적 배출권 인증 기제 등을 고려하여 탄소감축인증표준을 심의·조정한다.
   3. 인증위원회
      1.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자발적 배출권 인증 기제 등을 고려하여 탄소감축인증표준 및 관련지침의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2. 탄소감축인증표준 및 관련지침에 의거 감축사업 사업자가 제3자 검증을 완료 후 상정한 방법론 및 감축사업 등록, 그리고 감축량 인증을 심의·조정한다.
3. **(운영위원회 운영)**
   1. 운영위원회 역할 및 구성
      1.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탄소감축인증표준의 제·개정에 관한 제반사항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하도록 하며, 사무국 및 운영위원이 요청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정부,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등 대표성을 지닌 인사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4.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5. 운영위원의 임기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1. 사무국은 운영위원들에게 사전 검토 자료와 운영위원회 시간, 장소를 확정하여 안내한다.
      2.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운영위원은 심의안건에 부합하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운영위원의 심의서를 수렴, 심의 안건 별 재적 위원의 2/3 이상이 승인한 경우 의결한다. 단, 운영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결권은 서면으로 대체한다.
4. **(인증위원회 운영)**
   1. 인증위원회 역할 및 구성
      1. 인증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방법론 승인 및 감축사업 등록, 방법론 및 감축사업의 유효기간 갱신, 감축량 인증과 탄소감축 인증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으로 한다.
      2. 인증위원회는 사무국 판단 하에 수시로 개최한다.
      3.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을 인증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4. 인증위원회 위원장은 의결 사항에 따라 학계, 연구계 등 분야별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인증위원회 심의 절차
      1. 사무국은 인증위원들에게 사전 검토 자료와 인증위원회 시간, 장소를 확정하여 안내한다.
      2. 인증위원회에 출석한 인증위원은 심의안건에 부합하는 심의서 (별지 제2-3호)를 작성하고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증위원장은 인증위원회를 주재하며 인증위원의 심의서를 수렴, 심의 안건 별 재적 위원의 2/3 이상이 승인한 경우 의결한다. 단, 인증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결권은 서면으로 대체한다.
5. **(탄소감축인증표준 등의 승인)**
   1. 운영위원회는 사무국이 탄소감축인증표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승인을 요청한 경우 사무국이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2. 심의결과를 ‘승인’, ‘반려’ 중 하나로 결정하고,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경우, 해당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6. **(방법론 승인 및 감축사업 등록 심의)**
   1. 인증위원회는 사무국이 방법론 승인 및 감축사업 등록을 요청한 경우 사무국이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2. 심의결과를 ‘승인’, ‘반려’ 중 하나로 결정하고,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인증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경우, 해당 결과를 감축사업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승인된 방법론 및 감축사업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7. **(KCR 인증 심의)**
   1. 인증위원회는 사무국이 감축량 인증을 요청한 경우 사무국이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2. 심의결과를 ‘승인’, ‘반려’ 중 하나로 결정하고 심의결과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인증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경우, 해당 결과를 감축사업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KCR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부에 등록하고 발행한다.

**부칙**(2023. 02.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